

교육부 공고 제2023 - 19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28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교육위원회의 출범에 맞춰 「초·중등교육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교육과정 영향 평가 시행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법정 의무교육 법령 제·개정 관련 국가교육위원회와 요청기관 간 사전 협의 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협의 범위, 내용, 절차 등 규정 (안 제43조의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육과정지원팀(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598

- 이메일 : beautydj@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교육과정지원팀(전화 : 044-203-6717) 및 국가교육위원회 교육과정정책과(전화 : 02-2100-335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3(교육과정 영향 사전협의) ① 법 제23조의2 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교육위원회와 협의해야 하는 법정교육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 내용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교육 횟수 및 시간에 관한 사항
3. 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
4. 기타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영향을 주는 사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정교육을 신설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제1항 각호의 내용에 대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른 교육감협의체의 의견을 붙여 국가교육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③ 국가교육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요청받은 협의 사항에 대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전문위원회 사전검토를 거쳐 심의·의결한다.

④ 국가교육위원회는 협의 요청 사항에 대해 90일 이내에 심의·의결 결과를 협의 요청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 심의 의결하지 못했을 때는 60일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야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